


ESG위원회규정


Version 2.0

경기도 성남시
분당구 판교로 310
ECOLab 빌딩

	Title	
	<h1>ESG위원회규정</h1>	
Document #: SK케미칼-기본규정	Version #: 2.0	Issue Date: 2022/04/27

목 차

제1장 총칙.....	4
제1조 (목적).....	4
제2조 (적용 범위)	4
제3조 (직무와 권한)	4
제2장 구성.....	4
제4조 (구성).....	4
제5조 (위원장).....	5
제3장 회의.....	5
제6조 (소집권자).....	5
제7조 (소집절차).....	5
제8조 (결의방법).....	6
제9조 (검토사항).....	6
제10조 (이사회와의 관계)	6
제11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	7
제12조 (의사록)	7
제4장 보칙.....	7
제13조 (사무국)	7
제14조 (규정의 개폐)	7
부칙	8

	Title	
	ESG위원회규정	
	Document #: SK케미칼-기본규정	Version #: 2.0
	Issue	Date:
	2022/04/27	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SK케미칼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.)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한 ESG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 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
제3조 (직무와 권한)

- ① 위원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ESG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, 쟁점을 발굴 · 파악하여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전략 및 ESG 방향성에 대한 이사회의 자문 및 검토를 수행한다.
- ② ESG 관련 활동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환경경영 및 사회책임경영 정책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실행 계획 검토를 수행한다.
- ③ 사업분야의 리스크 및 기회를 식별 · 평가하기 위하여 적합한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실행 · 개선하고, 재무적 · 비재무적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대응전략 검토를 수행한다. <개정 2022.04.27>

제2장 구성

제4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.

	Title	
	<h1>ESG위원회규정</h1>	
	Document #: SK케미칼-기본규정	Issue Date: 2022/04/27
	Version #: 2.0	

-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이사회 결의로 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위원의 과반은 사외이사로 한다.

제5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고,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
제3장 회의

제6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7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	Title		ESG위원회규정	
	Document #: SK케미칼-기본규정	Version #: 2.0	Issue	Date: 2022/04/27

제8조 (결의방법)
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9조 (검토사항)

1. 연간 사업계획 및 수정
2. 중장기 사업계획 및 수정
3. 기타 경영에 중요한 ESG 추진 계획 및 활동
4. 중요한 전략적 이사회 의사결정 사항
 - 자기자본 2% 이상의 타법인 출자, 자산의 취득 및 처분
 - 자기자본 2% 이상의 생산설비의 신설 및 증설, 연구개발투자
 - 자기자본 2% 이상의 영업 양수도
5. ESG 추진과제 전년실적 / 당해년도 추진계획 및 ESG 전략 방향
6. 환경 사회 관련 주요 비재무 리스크 요인 및 이슈 사항 및 대응방안
7. 국내외 주요 ESG 평가 결과 등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관련 사항
8. ESG 역량 개발 및 내재화를 위한 지원 필요 사항
9. 환경 사회 관련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10. 기타 ESG 또는 전략 관련 주요 현안으로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<개정 2022.04.27>

제10조 (이사회와의 관계)

이사회는 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참고하되 위원회의 검토결과 및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.

	Title	
	ESG위원회규정	
	Document #: SK케미칼-기본규정	Version #: 2.0
	Issue	Date:
	2022/04/27	

제11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-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·직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2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
제4장 보칙

제13조 (사무국)

- ① 위원회의 사무국은 기획조직으로 한다.
- ② 사무국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 전반을 처리한다.

제14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	Title		ESG위원회규정	
	Document #: SK케미칼-기본규정	Version #: 2.0	Issue	Date: 2022/04/27

부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. 4. 27 개정 >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